

# 대표님들이 한번씩은 들어보고 경험해보신 세금환급 경정청구,

이제 더 이상 단일 공제항목을 통해 환급액을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세금을 리스크 없이 최대로 돌려받으시려면 실력과 경험으로 검증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 진형세무회계 소개

진형세무회계는 세금환급, 경정청구 업무에 집중하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가 함께 고객의 케이스를 검토합니다.  
조세불복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본 경정청구는 물론 국세청 이의신청, 과세기준자문, 조세심판청구 등  
세금환급 제도 전반에 최고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법규는 물론 관련된 일반법, 판례,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금환급 신청에 따라 납세자가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세무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드립니다.

## 전문가 소개

회계·세무·법률 고민을 한번에, 진형세무회계에서 ONE-STOP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각 분야에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가 의뢰인의 케이스를 함께 풀어갑니다.

대표 / 회계사  
**김진형**



### 주요경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前 Deloitte 안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 前 한국마사회 사내회계사
- 前 EY 한영회계법인 금융조세팀
-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 수상
- 송파세무서 영세납세자 나눔회계사

### 전문분야

- 경정청구, 조세불복 및 세무자문

회계사  
**최용준**



### 주요경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 前 감사원 심사관리관실
- 前 감사원 국세청 담당과

### 전문분야

-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회계사  
**이명규**



### 주요경력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 EY 한영회계법인 세무본부

### 전문분야

- 세무조사 대응, 세무자문 및 진단

세무사  
**이혁재**



### 주요경력

- 前 세무법인 서진
- 前 채용세무회계

### 전문분야

- 절세 컨설팅 및 세금환급

변호사  
**지혜수**



### 주요경력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 前 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 전문분야

- 조세관련 법리 분석 및 납세자보호

미국공인회계사  
**이유진**



### 주요경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Deloitte 안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 한진해운 투자관리팀

### 전문분야

- 이전가격 세무자문 및 진단, 중동 역외투자 자문

## 주요 경정청구 사례와 환급금 규모

진형세무회계는 차원이 다른 역량으로 최대 환급을 이루어내왔습니다.

과거 납부한 세금은 최대한으로 환급받되, 추징 등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드립니다.

<p><b>○○○산 (건설업)</b></p> <p>진행년도 2019년도 연 매출 4,800억대</p> <p>환급액 17,300,000,000원</p>	<p><b>○○○병원 (성형외과)</b></p> <p>진행년도 2022년도 연 매출 500억대</p> <p>환급액 2,720,597,439원</p>	<p><b>○○○산업 (서비스업)</b></p> <p>진행년도 2022년도 연 매출 5억대</p> <p>환급액 1,032,195,060원</p>
<p><b>(주)○○○○엔씨 (컨설팅업)</b></p> <p>진행년도 2023년도 연 매출 1조 3천억대</p> <p>환급액 691,316,120원 (1개년분)</p>	<p><b>○○정형외과 (정형외과)</b></p> <p>진행년도 2022년도 연 매출 54억대</p> <p>환급액 581,408,960원</p>	<p><b>(주)○○○○스쿨 (교육업)</b></p> <p>진행년도 2022년도 연 매출 300억대</p> <p>환급액 510,567,416원</p>
<p><b>(주)○○김 (제조업)</b></p> <p>진행년도 2023년도 연 매출 1,490억대</p> <p>환급액 215,347,240원</p>	<p><b>(주)○○컴 (서비스업)</b></p> <p>진행년도 2024년도 연 매출 480억대</p> <p>환급액 830,042,266원</p>	<p><b>(주)○○○니온 (컨설팅업)</b></p> <p>진행년도 2024년도 연 매출 610억대</p> <p>환급액 913,029,135원</p>

## 같은 건에 대해 추가 경정하여 성공한 사례

혹시 이미 경정청구를 했는데도 환급 효과가 없거나 적었다면, 진형세무회계에서 다시 검토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형세무회계에서는 기 진행한 케이스를 재검토하여 환급효과를 최대한으로 산출하고 인공시kin 실적을 자랑합니다.

<p><b>○○○여성의원 (김해) 연 매출 83억</b></p> <p>1차 (타사진행) 환급액 30,952,115원</p> <p>2차 추가 (진형세무) 환급액 247,716,678원</p>	<p><b>○○김 (충남) 연 매출 1830억</b></p> <p>1차 (타사진행) 환급액 57,707,497원</p> <p>2차 추가 (진형세무) 환급액 216,288,050원</p>	<p><b>○○○내과 (목포) 연 매출 91억</b></p> <p>1차 (타사진행) 효과없음</p> <p>2차 추가 (진형세무) 환급액 65,312,535원</p>
<p><b>○○병원 (여수) 연 매출 299억</b></p> <p>1차 (타사진행) 환급액 81,931,469원</p> <p>2차 추가 (진형세무) 환급액 263,246,673원</p>	<p><b>○○○병원 (평택) 연 매출 157억</b></p> <p>1차 (타사진행) 환급액 55,638,997원</p> <p>2차 추가 (진형세무) 환급액 207,962,453원</p>	<p><b>○○○○안과 (제주) 연 매출 21억</b></p> <p>1차 (타사진행) 환급액 56,044,930원</p> <p>2차 추가 (진형세무) 환급액 207,732,537원</p>
<p><b>○○엠 (부천) 연 매출 149억</b></p> <p>1차 (타사진행) 환급액 67,209,473원</p> <p>2차 추가 (진형세무) 환급액 249,489,170원</p>	<p><b>○○내과 (제주) 연 매출 30억</b></p> <p>1차 (타사진행) 환급액 19,758,153원</p> <p>2차 추가 (진형세무) 환급액 39,854,109원</p>	<p><b>○스탑 (서울) 연 매출 85억</b></p> <p>1차 (타사진행) 환급액 20,986,283원</p> <p>2차 추가 (진형세무) 환급액 90,443,140원</p>

## 자주 하시는 질문

### Q1.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의 빌미를 만들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던데요?

- 경정청구 제도는 국세기본법 45조의2항에 열거되어 있듯이 과·오납 한 세금(국세 및 지방세 등)을 돌려받는 납세자의 기본권리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법적근거 및 증빙서류를 기초로 과거(최근5년 이내)에 과·오납 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를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고, **국세청의 담당 세무공무원이 2개월동안 심사를 거쳐 지급하기때문에 세금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 81조의4 1항에 따르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하여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할수도 있는 세무조사의 남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의 절차 조사대상자 선정

##### 가. 정기 조사 대상사 (81조의6 제2항)

- 1)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신고서 및 재무제표 분석 (비율분석, 항목분석)
  - 성실도 등급 (A~D, 직전2년 / 당해년도)
- 2) 장기 (4과세기간) 미조사
  - 중견기업 이상
- 3)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 중소기업 위주

##### 나. 비정기 조사 대상사 (81조의6 제3항)

- 1)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신고, 사후검증 불성실)
- 2) 무자료 · 위장 · 가공거래
- 3) 구체적인 탈세제보
- 4)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 5) 사회적물의 야기 및 금품제공, 알선 납세자

##### 다. 조사대상자 선정부서

- 1) 정기 선정 : 세원관리부서
- 2) 비정기 선정 : 조사부서
  - 세무서 선정 분은 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

##### 라. 비정기 세무조사 특성

-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 2) 조사대상기간 연장, 조사기간 연장
- 3) 관련인 및 관련기업 동시조사
- 4) 장부 서류 임의보관, 압수수색
- 5) 금융조사, 거래처조사, 교차조사
- 6) 포렌식 조사, 조세법칙조사 전환

#### 참고사항



#### “경정청구가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2두911, 2014, 6, 2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하는데,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된 선정사유 외의 사유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위법입니다.**

### Q2. 세금환급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예상환급금 검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난 5개년의 세무조정계산서와 기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추후 환급금 양도요구서,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주세요.

### Q3. 예상환급금 검토를 위해서 착수금 등을 지불해야 하나요?

- 착수금X, 선수금X, 중간수수료X
-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세금이 환급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Q4. 이미 경정청구를 한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다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 타 경정청구 업체에서 환급 받지 못하거나 부분인용, 거부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도 진형세무회계는 추가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재검토해드립니다.
- 아울러, 상급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판 청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해 환급을 도와드립니다.

## 자주 하시는 질문

### Q5. 경정청구는 기간은 과거 몇년까지 해당되나요?

- 경정청구는 과거 5개년간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국가의 부과체기간(단기의 5년)에 일치시켜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으며, 그동안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고충민원에 의존하였던 납세자의 권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청구기간에 대한 그동안의 변천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정청구기간의 변천>

'95. 1. 1. ~	'01. 1. 1. ~	'05. 7. 13. ~	'15. 1. 1. 이후
1년 * 경정청구제도의 신설	2년	3년	5년 ※ [부칙] * 2015.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 Q6. 그런데 경정청구는 왜 5년 전부터 에서야 활성화 되었나요?

- 2018년부터 정부에서 다양한 공제감면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고용중대  
세액공제 신설



최저시급  
16.4%인상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지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Q7. 세금환급을 받게 되면 그동안 세무 신고한 원장이 달라지는 건가요?

- 원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만을 검토하여 애초에 신고/납부한 세금액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 따라서, 소득율(소득금액/매출액)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소득율의 변화관리는 기장업무 중 주요한 관리 항목입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내용상 애초에 신고한 원장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율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 Q8. 경정청구 위임업체를 선택하는 올바른 기준은 무엇인가요?

- 순환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순환금액(환급액 - 환급수수료)을 기준으로 농특세충당액, 수정신고할 사항 등 부가적인 비용을 제하고 순수하게 얼마가 환급될 수 있는지 비교해보세요.
-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챙겨보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이전에 사후관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지, 환급완료 후에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경정청구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한지 따져보세요.
- 전문가의 경정청구 수행건수(Q), 고액 경정청구건에 대한 경험(P)이 충분한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 Q9. 기존에 기장을 대리해주던 세무대리인과의 관계는 어떡하지요?

- 진형세무회계에 경정청구를 의뢰하신다고 해서 기존의 세무대리인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당 경정청구 용역계약과는 별도로 현재 세무대리인과의 기장대리 관계를 유지하시면 되고, 경정청구가 완료된 이후 관련된 자료와 청구항목등은 모두 세무대리인에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재무건강 증진을 위한 절세 특효약

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며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그래서 재무와 세무 관리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본업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여기다 병원경영 업무까지 더해지면 나의 연 소득은 얼마인지, 각종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의료인의 소득은 여러 가지 세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동시에 다양한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제 혜택만 제대로 활용해도 연간 납부하는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무건강 증진을 위한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절세의 첫걸음: 교토삼굴(狡兔三窟) 전략

전국시대 제나라의 책사 풍훤에서 유래된 ‘교토삼굴’은 영리한 토끼가 위험에 대비해 세 개의 굴을 준비한다는 뜻이다. 이는 세금 관리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한다. 최상의 절세를 위해서는 기장, 조사, 경정 각 분야의 세무전문가 3인을 찾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상시 자문받기를 추천한다.

### <기장>

정확하고 꼼꼼한 기장은 세무 관리의 기본이다. 의료인은 소득원이 다양하고 비용 구조도 복잡하다. 기장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고 성실한 세무 대리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조사>

납세자가 가장 걱정하는 분야는 단연 세무조사이다. 조사대응을 위해 국세청이나 세무서 근무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좋으며, 조사국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되 전문가의 협상력과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 <경정>

경정청구는 과거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세법 최신 개정사항, 예규, 심판례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며, 의료인의 수익 구조가 복잡한 만큼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과 원활한 국세청 납세국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위 세 가지 분야 중 절세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은 바로 경정 전문가이다. 기장대리인이 성실하게 신고업무를 수행했을지라도, 지난 5년간의 세금 납부 흐름과 최신 예규판례를 분석해 환급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또 다른 능력이 요구되므로 경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 절세를 위한 특효약, 경정청구

경정청구제도는 1995년 신설되었는데 이때는 청구 가능 기간이 1년에 불과했다. 직전 과세 연도에 납부한 세금만 청구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 기간은 2005년에 3년으로 늘어났고 2015년에는 5년까지 연장되어 현재에 이른다. 과세당국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해 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미수령 국세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 납세자가 되찾아 가기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적극 홍보 중이다. 그런데 의료분야에서 일명 ‘경정청구 붐’이 일기 시작한 건 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8년에 고용중대세액공제 신설, 최저시급 16.4% 인상,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지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변화가 생기며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에게 세제 혜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기 때문이다.

## 경정청구 전문가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경정청구가 납세자로서는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안타깝게도 경정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청구는 납세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청구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는 60일만에 걸친 과세당국의 심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60일 후에도 심사가 연장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인용되는 경우도 잦다. 세법 구조가 워낙 복잡한 데다 매년 세수가 부족해 지면서 심사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정청구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청구 인용률이 높은지, 평균 환급금액은 얼마인지,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까다로운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 보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환급이 완료된 후에도 상시 근로자 수 유지 등 사후 관리 조건이 있으니 사후 관리 사항까지 케어해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급받은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최초 경정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양한 불복절차로 납세자의 권리를 끝까지 대변해줄 수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 경정청구를 한 번 더 진행해도 될까?

경정청구가 포변화하면서 대부분 의료인이 경정청구에 대해 이해하고, 또 이미 진행을 완료한 경우가 있다. 이미 경정청구를 했으니 환급금을 전부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 청구한 과세연도도 다시 검토해보면 추가 환급이 가능한 사례가 70%를 넘는다. 조세 혜택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145개 이상의 다양한 특례규정이 존재하고 전문가에 따라 예규판례 해석 능력, 납세 국 담당자 대응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 좋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건 역시 세무조사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보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세무조사이다. 괜히 경정청구를 했다가 굼어 부스럼 만드는 게 아닌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납세국과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조사국은 별도의 조직이며, 이미 2012년에 대법원 판례로 경정청구가 세무조사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며, 경정청구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납세자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납세액 관리는 단순히 재정적 문제를 넘어 병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세금 환급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세법에 규정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 병원의 절세를 위한 교토삼굴 전략을 짚어보고 혹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보기를 추천한다.

신년    병원 탐    병원경영    병원CEO    세무전    병원계소    공지사    목  
사    방    전략    포럼    략    식    항    록

서울특별시병원회 

 <b>국세청</b> <small>National Tax Service</small>	<h1>보도참고자료</h1>	
<b>보도일시</b>	<b>2020. 5. 25.(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 과 장	유병철 과 장	(044)204-3001
--------	---------	---------------

배포 일자: **2020년 5월 25일**

담당 자	이동현 사무관	(044)204-3037
------	---------	---------------

## 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조기 추진
- **홈택스, 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 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1,434억 원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미수령 환급금 집중축소기간을 지정(5~6월)하여 운영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 1. 미수령 환급금 발생 사유

- 미수령 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누리집 >> 세무서소개 >>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두911, 2014.06.26)에서도 규정된 선정 사유 외의 사유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과세처분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국세부과취소] [공2014하,1479]

🔖 📄 🕒 ⬇️ 📄 📄

####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이 위 규정이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판결요지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1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규 건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 **건의자 : 김진형**

현 행	개 선 (안)
<p><b>제26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b></p> <p>⑨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2015. 2. 3. 신설)</p>	<p><b>제26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b></p> <p>⑨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2015. 2. 3. 신설)</p>

### 개선취지

평균임금 계산방식의 합리화

### 문제점

1년 미만 근로한 중도입사자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월 환산함으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나, 근로소득의 금액 계산할 때에도 월 환산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이중으로 과대계상 되는 오류 존재

ex. 월급여 200만원의 근로자 7월 중도 입사 시 평균임금

1. 상시근로자수 =  $6/12 = 0.5$
2. 상시근로자의 임금의 합계 =  $1200/6 * 12 = 2400$
3. 평균임금 =  $2400/0.5 = 4800$ 만원

월 급여 200만원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급여 400만원으로 과대계상됨

## □ 개선방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 시 월 환산효과는 상시근로자수에 반영되어있으므로 근로소득의 금액 계산 시 **다시 월환산하지 않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한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를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해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다.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인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

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데 뿌듯했다.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을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로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 “고용,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챙겼우?”...광산세무서의 적극행정

관내 공단 소속 법인들 찾아가 놓치기 쉬운 '조세특법'상 세제혜택 미리알려  
“과오납 법인세 있으면 5년전 것도 경정청구 가능...해당유무부터 따져야”

이상현 기자 dipsey@tfnews.co.kr

등록 2023.02.22 14:50:30



▲ 광산세무서 공성원 팀장이 지난 21일 관내 법인 임직원들에게 고용, 시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세제혜택을 강의했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3월말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고용증대, 시설투자 등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적극 알리고 있다.

중소법인들은 그러나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추가 고용이나 세부 시설투자마다 적용되는 '환경'이나 '고용' 분야 관련 법령이 자사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녹록찮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광주지방국세청 예하 광산세무서(서장 임진정)는 "지난 21일 오전 관내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세정·세제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22일 이 같이 본지에 알려졌다.

이번 설명회 강사는 재산법인납세과 공성원 법인1팀장이 맡았다. 세금 전문가 양성기관인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25년째 국세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 팀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공제와 감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 팀장은 "관련 세법 개정이 잦고 다른 법령도 이해해야 하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면서 "이런 세제혜택을 놓치면 경정청구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도 녹록치 않으니 가급적 정기 신고납부 때 챙기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공 팀장은 "작년 8월 설명회에서 공제·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은 법인들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3월 법인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고용증대와 시설투자를 실시한 법인이 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 열람 등 기업의 성실신고 및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항목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임진정 광산세무서장은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산단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산법인납세과 김용오 과장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성에 뜻을 모아 산단 입주기업 협의체(관리공단)와 광산세무서가 함께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조특법'상 세제혜택 경정청구 전문가인 김진형 공인회계사(진형세무회계 대표)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혹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놓친 공제·감면 혜택이 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개년간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 더 낸 법인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다만 "중소기업들은 '조특법' 자체가 워낙 자주 바뀌니, 세분화된 시설투자나 인력 고용과 결부된 '환경' 분야나 '고용' 분야 관련 법령까지 꿰고 있기가 쉽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 김진형 회계사

그러면서 "최근 5년까지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 전문가 진단부터 받아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보강병원

## 간호부 한국전문소생술교육(KALS) 실시

척추전문병원 의료법인 서봉의료재단 보강병원(이사장 지용철)은 지난 2025년 6월 14일(토) 보강병원 간호부를 대상으로 한국전문소생술 교육(KALS Provider)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병원 및 구급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부터 장기간 근무해온 경력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들을 중심으로 심폐소생술 이론, 심전도 리듬 분석, 환자 상태 인식, 팀 기반 흉부 압박, 기도 확보(후두튜

브 및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및 제세동기 사용 등 실제 술기 위주의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병원 내 심정지(TROICA)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응급상황에 있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보강병원의 지용철 이사장은 “앞으로도 전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병·의원을 위한 One-Stop 세금환급, 절세솔루션

### 진형세무회계 No.1 Tax Saving Solution



지역	서울, 경기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환급성공 병의원 수	112	268	78	58	41	30

### 병·의원 세금환급 경정청구,

안심하고 진형세무회계에 의뢰하세요

**POINT 01** 환급실적, 환급규모에서 최고의 역량을 자랑합니다.

- 병·의원 대상 세금환급 성공실적 580건↑
- 평균 환급액 1억 이상

**POINT 02**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 각 전문가가 의뢰인의 케이스에 맞춤형 절세솔루션을 ONE-STOP으로 제시

**POINT 03** 경정청구 이후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 경정청구 이후 해당 청구건의 법상 제척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무한 책임 약속

# TAX 분야 차세대 리더 50인 명단

이름	소속	직책	키워드
강남규	법무법인 기온	대표변호사	조세소송
고봉성	현대세무법인 송도지점	대표세무사	절세컨설팅·인천
구중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세소송
김규흠	세무법인 진솔	대표세무사	병·의원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	조세소송
김동현	이촌세무법인 반포지점	대표세무사	재무설계·컨설팅
김사웅	세인관세법인	관세사	관세
김상욱	한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절세컨설팅·창원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절세컨설팅·분당
김재성	텍스퀘어	대표세무사	병·의원
김재은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	비상장주식평가
김조겸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대표세무사	건설부동산
김주현	세무법인 다솔 제1지점	대표세무사	크리에이터
김지호	세움텍스	세무사	가상자산
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회계사	경정청구
김철중	세무법인 다솔 마곡중앙지점	대표세무사	상속·증여
김철훈	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	국제조세
김현성	세무법인 리원	대표세무사	울인원 컨설팅 서비스
김희연	디자인텍스	대표회계사	세무·경영컨설팅
박나리	다온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절세컨설팅·남양주
박성진	텍스퀘어	대표세무사	병·의원
박송이	세무법인 다림	대표세무사	절세컨설팅
박수빈	다온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절세컨설팅·부산

박수현	천지세무법인 인천지사	대표세무사	절세컨설팅·인천
박재혁	위드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절세컨설팅·세종
박정수	나이스세무법인 성동지사	대표세무사	상속·증여
박지연	세무회계여술	대표세무사	상속·증여
방준영	세무회계여술	대표세무사	국제조세
변능수	비앤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절세컨설팅
서휘빈	원영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절세컨설팅
손서희	넘버스세무회계에스	대표세무사	스타트업·쇼핑몰
송민화	송민화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절세컨설팅·고양
신유한	세무회계 유한	대표세무사	절세컨설팅
신현진	세무법인 함께	세무사	절세컨설팅
안원웅	세무법인 다솔	변호사·세무사	상속·증여
양원봉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	공인회계사	조세소송
오한나	영한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종교단체
이소민	소인텍스	대표세무사	절세컨설팅·광고
이정근	세무법인 엑스퍼트 논현점	대표세무사	상속·증여
전병수	관세법인 선율	대표관세사	관세
조남철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세무사	기업승계
조우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조세소송
조학래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	조세소송
최용준	세무법인다솔WM센터	대표세무사	상속·증여
최자영	세무법인 다림	대표세무사	절세컨설팅
허상혁	서울지방관세사회	부회장	관세
허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조세소송
홍지영	세무법인 더봄	대표세무사	절세컨설팅
황인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조세소송
황재훈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	대표세무사	세무조사

## 클라이언트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세무조사”에 대하여

이미 대법원 판례로 경정청구가 세무조사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경정청구로 인해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닌가요?”

(대법원 2012두911,2014,6,2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하는데,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된 선정사유 외의 사유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위법입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두911, 2014.06.26)에서도 규정된 선정 사유 외의 사유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과세처분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국세부과취소] [공2014하,1479]

🔖 📄 🔄 ⬇️ 📎

####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이 위 규정이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판결요지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조세법령

국세기본법

현 [시행 2025.06.15.] [제20774호, 2025.03.14.] 일부개정    조회    새창열기    현행법

개정이유    신규법비교    법령비교

전문보기

조문보기

하위법령 연결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별지서식 연결은 추가조치 예정) 좀더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습니다.

조문별버튼    전체열기    전체닫기

부칙    위임행정규칙    기본통칙    3단보기    연혁보기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버튼접기 <    질의/판례    개정내용    3단보기    연혁보기    보관하기    출력    저장

-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7.12.19>
  -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2014.1.1, 2015.12.15>
  -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 2. 장부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4.1.1]